

●**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37호**

2025년 1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17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**개선권고 재결공고[부산해심 제2025-039호(어선 제703유경호·어선 세양호
충돌사건)]**

사 건 명 : 어선 제703유경호·어선 세양호 충돌사건

피요청자 : 오**(****. *. ***)

경*** ** * ** * ** * ** *

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세양호가 2024. 5. 2. 19:11경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도 부근 대섬 남방 약 2.4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다른 어선 제703유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충돌사고는 서로 시계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제703유경호가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한 것이 주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, 귀하가 조업 중에 상대 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양호의 선장인 귀하에게 조업 중 수시로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 조업 방방의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